

# 取消審判請求書作成要領

(上)

李 秀 宗

〈特許廳 審判所長〉

<例 示>

심 판 청 구 서	
청 구 인	성 명 홍길동화학주식회사주민등록 대표이사 홍길동번 호
	주 소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피청구인	성 명 임격정화학주식회사주민등록 대표이사 임격정번 호
	주 소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심판사건의 표 시	등록상표 제 호 취소심판청구사건
상품을 사용할 상품명	제12류, 포마드
청구의 취지	별지와 같음
청구 이유	별지와 같음
증거 방법	별지와 같음
첨부서류목록	별지와 같음
특허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 합니다.  1978. 7. 18. 홍길동 화학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길동 ㉠ 특허청장 귀하	

## 請求의 趣旨

등록상표 제 호의 등록을 취소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결을 구함.

## 請求의 理由

1. 청구인은 화장품, 의약품 등의 제조판매업자로서 “花王”이라 한문자를 획서한 하부에 “장미꽃”을 도시하여 된 상표를 사용하지 오래며 이를 상표등록하고자 제12류 백분·로손·향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

록출원(19년 상표등록출원 제 호)하였으나 본건 등록상표 및 그 연합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어 이와 저촉된다는 이유로 그 등록이 거절되어 본건 등록상표의 존재는 청구인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건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2. 피청구인이 소유하는 본건 등록상표 제 호(이하 본건 등록상표라 한다)는 보통의 인쇄서체로 “장미”라고 한글을 획서한 하부에 장미꽃을 도시하여 된 것으로 제12류 포마드를 지정상품으로 19년 월 일에 출원하여 19년 월 일에 출원공고(상표공보 제 호)되고 19년 월 일에 등록된 것은 갑 제1호증의 상표등록원부등본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 명백하고, 한편 본건 등록상표의 연합상표로 등록되어 있는 등록상표 제 호(이하 연합상표라 한다)는 필기체로 “장미”라 획서하여 된 것으로 제12류 포마드를 지정상품으로 19년 월 일에 등록된 것임을 갑 제2호증의 상표등록원부등본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 명백하다.

3. 본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청구인은 본건 등록상표 및 그 연합상표를 상표로 등록한 19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표로 그 지정상품인 화장품(포마드)에 사용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상표의 사용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었음을 찾아볼 수 없다.

(2)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피청구인의 소재지에서 화장품(포마드)을 제조 판매하는 업자로서의 정당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지 아니함이 갑 제3호증의 관할 사무서의 비파세증명에 의해 청구인이 본건 심판을 청구하기 이전에 청구인의 상표담당 김갑동의 개인 이름으로 피청구인에게 갑 제4호증과 같은 우편내용증명을 본건 등록상표 및 그 연합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대한 조회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현재까지 아무런 회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에 의해 인정되므로 상

## 工業所有權審判請求 模範例 (3)

거래상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영업활동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3) 화장품류인 포마드를 제조 판매함에 있어서는 보건보사부장관의 품목에 관한 제조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인데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19년 월 일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19년 월 일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있고 심지어 그 허가신청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갑 제 5호증의 보건사회부장관의 확인서에 의해 명백함으로 피청구인이 본건 등록상표 및 그 연합상표를 영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이유에 의한 것이 아니다.

(4) 본건 등록상표 및 그 연합상표의 불사용사실의 보다 구체적인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권위있는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피청구인의 회사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결과 피청구인의 회사의 대표자의 한 사람인 “임삼삼”의 사망으로 19년 월경부터 휴업상태에 있고 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본건 등록상표 및 그 연합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음이 갑 제 6호증의 조사결과 보고서 및 공증인이 증한 피청구인의 회사 영업부장 ○○○의 진술서에 의하여 밝혀졌다.

(5) 한편 본건 등록상표 및 그 연합상표는 특허국에 비치되어 있는 상표원부에 의한 때 현재에도 피청구인 (임겨정화학주식회사)이 상표권자로 되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타인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여 본건 등록상표 및 그 연합상표를 사용하게 한 사실이 없음은 특허국장이 발행한 갑 제 1호증 및 갑 제 2호증의 상표원부등본에 의하여 명백하다.

(6) 피청구인과 동업관계에 있는 ○○○화장품상사의 3개사가 본건 등록상표 및 그 연합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그 상표들의 등록일자에 해당하는 당시부터 현재까지 취급한 사실이 없음은 갑 제 7호의 확인서에 의해 인정할 수 있고 또 갑 제 8호증에서 보는 바와같이 피청구인과 지배관계에 있는 ○○○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화장품에 관한 월간지 “○○○”에 의하면 19년 월 호까지는 피청구인이 별도 상품인 “헤어크림”에 사용하는 상표 “黑髮”을 매월 그 월간지에 게재하고 있었으나 본건 등록상표 및 그 연합상표에 대한 기재는 없었고 한편 피청구인의 대표자의 한 사람인 “임삼삼”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19년 월로부터는 “黑髮”이란 상표마저도 기재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본건 등록상표 및 그 연합상표는 19년 월경부터 이를 영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더욱 명백한 것이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국내에서본

건 등록상표 및 그 연합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본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45조 제 1항 제 3호에 의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청구합니다.

### 證據方法

- 갑 제 1호증 등록상표 제 호의 상표원부등본
- 갑 제 2호증 등록상표 제 호의 연합상표인 등록상표 제 호의 상표원부등본
- 갑 제 3호증 ○○세무서장의 비과세증명
- 갑 제 4호증 피청구인에게 조회한 청구인의 회사상표담당 “김갑동”의 상표에 대한 문의서
- 갑 제 5호증 보건사회부장관의 확인서
- 갑 제 6호증 공증인이 증한 ○○○조사기관의 조사서
- 갑 제 7호증 ○○○화장품상사의 8개사의 입증서
- 갑 제 8호증 화장품에 관한 월간지 “○○○”

### 添附書類 目錄

1. 심판청구서 정 부분 각 1통
2. 갑 제 1호증 " "
3. 갑 제 2호증 " "
4. 갑 제 3호증 " "
5. 갑 제 4호증 " "
6. 갑 제 5호증 " "
7. 갑 제 6호증 " "
8. 갑 제 7호증 " "
9. 갑 제 8호증 " "
10. 登記簿謄本 1통(正本에만 添附)

### 記載上の 注意

1. 審判請求는 1權利에 대해 1請求書로 한다.
2. 審判請求書는 正本 및 副本(被請求人の 數에 該當하는 數)을 提出한다.
3. 同時に 2通 以上の 청구서를 提出하는 때에는 一連番號를 記入하는 것이 좋다.
4. 請求人の 欄에는 姓名을 먼저 表記하고 그 아래에 住所를 표기한다. 自然人인 경우에는 住民登錄番號를 표기한다. 姓名은 戶籍上の 表示와 똑같이 표기하고 略字를 使用해서는 아니되며 法人의 경우에는 法人登記簿上の 表示와 똑같이 표기하고 代表者의 姓名을 표기한다. 印章에 있어서 자연인의 경우는 같은 하나의 인장만을 사용하고 인장을 變更하는 때에는 印章變更屈를 제출한다.

-60면에 계속-

科學技術處監督

- ① 社團法人 發明協會(特許廳과 共同監督)
- ② 財團法人 東亞科學振興會(文部省과 共管)
- ③ 財團法人 日本發明振興會(技術輸出斡旋 開放研究所)
- ④ 社團法人 全國發明婦人協會
- ⑤ 社團法人 婦人發明學協會
- ⑥ 社團法人 發明學會(發明成功的 法則探究 및 調查 研究實施促進→受講生 34,400名輩出 日曜發明學校 運營)
- ⑦ 財團法人 大河內紀念會
- ⑧ 財團法人 藤原科學財團
- ⑨ 財團法人 電氣科學技術獎勵會
- ⑩ 財團法人 國產技術振興會
- ⑪ 財團法人 新技術開發財團(아이디어技術開發造成 國際技術交流)
- ⑫ 財團法人 大倉和親紀念財團
- ⑬ 財團法人 岩谷道治紀念財團
- ⑭ 其他 地方發明센터(發明技術相談, 機械設備貸與, 試作 및 試驗受託閱覽, 講習展示會) <계 속>

<表 10> 年度別技術導入件數 (單位: 件)

1963~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計
372	67	85	94	124	165	907

<表 11> 業種別·國家別技術導入件數 (單位: 件)

業種別	國家別						計	
	美	國	日	本	西	獨		其他
食料品		5		5		2	1	12
纖維		16		18		1	4	39
化學		37		103		4	20	164
窯業		1		14		3	—	18
製藥		8		9		4	6	27
金屬		16		51		—	12	79
機械		41		172		13	23	249
電子·電氣		37		124		4	9	174
通信		4		20		3	—	27
電力		7		6		3	1	17
建設		5		1		—	3	9
其他		19		38		4	31	92
計		196		561		41	90	907

<完>

법인의 경우 그 節次를 밟는 代表者의 인장은 印鑑으로 登錄한 것을 사용한다.

5. 被請求人의 欄에는 商標登錄原簿上(以下 商標原簿라 한다)의 商標權者를 표기한다. 取消을 求하는 當該 登錄商標의 商標權者가 2人以上인 때에는 그 全部를 표기한다. 이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의 부분은 그 數단금을 제출한다.

상표권자의 주소가 상표원적상에 표시되어 있는 것과 實質的으로 相違할 때에는 상표원부상의 주소와 實際 사는 주소를 둘다 표기하고 그 뜻을 설명함이 좋다. 상표권자의 성명 또는 법인의 名稱에 있어서 相續 其他 一般承繼에 의하여 그 표시와 實際上的 上표권자가 相違할 때에는 원부상의 표시를 그대로 표기함과 아울러 實際상의 上표권자를 표기하고 그 內容을 설명함이 좋다.

9. 심판청구서의 提出日은 제출하는 날을 記入한다.

7. 受信人은 特許廳長으로 한다.

8. 「事件의 표시」欄에는 “登錄商標 第○○○號 取消 審判請求事件”이라 표기한다.

9. 「상표를 사용할 商品名」欄에는 미리 상표원부를 確認하고 이와 一致하도록 표기한다.

10. 「청구의 趣旨」欄에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登錄商標 第○○○號의 등록을 취소한다. 審判費用은 피청구인의 負擔으로 한다는 審決을 求함」

11. 「청구의 理由」欄에는 다음 事項을 記載한다.

(계 속)

⑥ 他部署와의 協力關係

특허부는 研究開發部등과의 連絡을 累密히 하여 사내의 연구개발동향을 正確히 把握함으로써 國開發果를 有效適切히 權利化하는 한편 특허문제의 諮問에 應하고 있다.

9. 特許部員의 教育

特許部員은 各自의 經驗에 따른 希望대로 特許協會의 各種研究會에 參加하고 또한 各種講演會에도 積極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10. 社內 特許意慾提高對策

平常業務를 통하여 관계부서와 接觸할때 特許意慾을 提高하고 法的 改正이나 어떤 機會가 있으면 巡廻說明會등을 열어 PR에 힘쓴다. 또한 出願補償, 實績補償 制度를 採用함으로써 특허의식을 제고시킨다.